

# 대전 에테르 스위트 입주자모집공고



- "대전 에테르 스위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방문을 각 일정별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분양일정 및 상품관련 등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www.대전에테르스위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관람이 우선하며,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일정에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하며, 예약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인원의 축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향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대전 에테르 스위트" 견본주택 분양상담 및 전화(☎042)825-5525,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03.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과지역이고 비청약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본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권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과지역 및 비청약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과지역 및 청약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2021.11.03.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애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도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가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결절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지속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지속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지속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공동인증서, ③ 네이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플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향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층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보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보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경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경인받지 않은 경우 입찰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대전에드레스위협.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시일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임차계획 신고 의무화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임차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력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2. 11. 14(월)	2022. 11. 15(화)	2022. 11. 16(수)	2022. 11. 25(금)	2022. 11. 26.(토) ~ 2022. 12. 01.(목)	2022. 12. 06.(화) ~ 2022. 12. 08.(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접수 (10:00 ~ 18:00)	방문 계약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 건물주택</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당사 건물주택 건물주택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5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물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바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33842호(2022.11.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4-6번지 외 7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8층 2개동 총 138세대  
 [특별공급 72세대(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2세대, 신혼부부 28세대, 생애최초 12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2000774	01	062.4016	62	62.4016	26.1676	88.5692	39.4567	128.0259	9.0677	3	0	0	0	0	0	0	3	-
		02	066.9377	66	66.9377	28.0698	95.0075	42.3249	137.3324	9.7268	3	0	0	0	0	0	0	3	-
		03	084.9720A	84A	84.9720	35.6323	120.6043	53.7279	174.3322	12.3474	33	4	3	7	3	1	18	15	1
		04	084.8924B	84B	84.8924	35.5990	120.4914	53.6777	174.1691	12.3358	33	4	3	7	3	1	18	15	1
		05	084.8641C	84C	84.8641	35.5871	120.4512	53.6598	174.1110	12.3317	33	4	3	7	3	1	18	15	1
		06	084.8440D	84D	84.8440	35.5787	120.4227	53.6471	174.0698	12.3288	33	4	3	7	3	1	18	15	1
합계											138	16	12	28	12	4	72	66	4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에 따라 일부 면적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비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모델하우스 및 각종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동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023.05.28	2023.11.28	2024.05.28	2024.11.28	2025.05.28	2025.09.28	입주 지정기간
62	101동 3호	36~38층	3	169,028,400	365,871,600	534,900,000	10,000,000	4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53,490,000	160,470,000
66	101동 2호	36~38층	3	169,249,600	366,350,400	535,600,000	10,000,000	4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160,680,000
84A	102동 2호	5층	1	176,328,000	381,672,000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6~7층	2	178,129,200	385,570,800	563,700,000	10,000,000	4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169,110,000
		8~9층	2	179,582,800	388,717,200	568,300,000	10,000,000	4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170,490,000
		10~14층	5	180,973,200	391,726,800	572,700,000	10,000,000	4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171,810,000
		15~19층	4	182,363,600	394,736,400	577,100,000	10,000,000	47,710,000	57,710,000	57,710,000	57,710,000	57,710,000	57,710,000	57,710,000	173,130,000
		20~24층	5	183,722,400	397,677,600	581,400,000	10,000,000	48,14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174,420,000
		25~29층	5	185,112,800	400,687,200	585,800,000	10,000,000	4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175,740,000
		30~34층	5	186,471,600	403,628,400	590,100,000	10,000,000	4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177,030,000
84B	102동 3호	5층	1	177,939,600	385,160,400	563,100,000	10,000,000	4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56,310,000	168,930,000
		6~7층	2	179,772,400	389,127,600	568,900,000	10,000,000	4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56,890,000	170,670,000
		8~9층	2	181,226,000	392,274,000	573,500,000	10,000,000	4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172,050,000
		10~14층	5	182,616,400	395,283,600	577,900,000	10,000,000	47,790,000	57,790,000	57,790,000	57,790,000	57,790,000	57,790,000	57,790,000	173,370,000
		15~19층	4	184,006,800	398,293,200	582,300,000	10,000,000	4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174,690,000
		20~24층	5	185,397,200	401,302,800	586,700,000	10,000,000	48,670,000	58,670,000	58,670,000	58,670,000	58,670,000	58,670,000	58,670,000	176,010,000
		25~29층	5	186,787,600	404,312,400	591,100,000	10,000,000	4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59,110,000	177,330,000
		30~34층	5	188,178,000	407,322,000	595,500,000	10,000,000	4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78,650,000
84C	102동 1호	5층	1	176,328,000	381,672,000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6~7층	2	178,129,200	385,570,800	563,700,000	10,000,000	4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169,110,000
		8~9층	2	179,582,800	388,717,200	568,300,000	10,000,000	4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56,830,000	170,490,000
		10~14층	5	180,973,200	391,726,800	572,700,000	10,000,000	4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171,810,000
		15~19층	4	182,363,600	394,736,400	577,100,000	10,000,000	47,710,000	57,710,000	57,710,000	57,710,000	57,710,000	57,710,000	57,710,000	173,130,000
		20~24층	5	183,722,400	397,677,600	581,400,000	10,000,000	48,14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58,140,000	174,420,000
		25~29층	5	185,112,800	400,687,200	585,800,000	10,000,000	4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175,740,000
		30~34층	5	186,471,600	403,628,400	590,100,000	10,000,000	4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59,010,000	177,030,000
84D	101동 1호	5층	1	175,885,600	380,714,400	556,600,000	10,000,000	45,660,000	55,660,000	55,660,000	55,660,000	55,660,000	55,660,000	55,660,000	166,980,000
		6~7층	2	177,686,800	384,613,200	562,300,000	10,000,000	4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168,690,000
		8~9층	2	179,140,400	387,759,600	566,900,000	10,000,000	4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56,690,000	170,070,000
		10~14층	5	180,499,200	390,700,800	571,200,000	10,000,000	4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171,360,000
		15~19층	4	181,889,600	393,710,400	575,600,000	10,000,000	4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172,680,000
		20~24층	5	183,248,400	396,651,600	579,900,000	10,000,000	47,990,000	57,990,000	57,990,000	57,990,000	57,990,000	57,990,000	57,990,000	173,970,000
		25~29층	5	184,638,800	399,661,200	584,300,000	10,000,000	4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175,290,000
		30~34층	5	185,997,600	402,602,400	588,600,000	10,000,000	48,860,000	58,860,000	58,860,000	58,860,000	58,860,000	58,860,000	58,860,000	176,580,000
		35~38층	4	187,388,000	405,612,000	593,000,000	10,000,000	4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177,90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

- 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될 수 있음.)
- 중도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달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반(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 중요도(1)	VII-0.22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서'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하며, 「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입니다.

① 납부세액

기재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납부세액	15만원

②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후 출력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합니다.

※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ul> </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구분	내용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b>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월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금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li><b>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금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b>300%</b>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전체 주택공급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b>400%</b>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b>400%</b>를 초과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li> <li>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li> <li>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li> <li>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li> <li>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li> <li>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li> <li>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ul>

###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84A	84B	84C	84D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4	4	4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3	3	3	12
신혼부부 특별공급	7	7	7	7	28
생애최초 특별공급	3	3	3	3	1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1	1	4
합 계	18	18	18	18	72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의 10%이내) : 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신 분.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추천기관

구분	기관
장애인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별경)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임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임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임주시까지 임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40 35 3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15 10 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5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주택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20 15 10	■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5 10 5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도·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행위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1.03.(목) ] 07.01. ~ 12.31.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전년도 소득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전년도 소득
--	----------------------------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임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임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임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양의 경우에는 임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임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6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7,450,721원	7,200,810원~8,640,971원	7,326,073원~8,791,286원	7,779,826원~9,335,790원	8,233,579원~9,880,294원	8,687,332원~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8,692,508원	7,200,810원~10,081,133원	7,326,073원~10,256,501원	7,779,826원~11,527,009원	8,233,579원~11,527,009원	8,687,332원~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9,934,294원	8,640,972원~11,521,294원	8,791,287원~11,721,715원	9,335,791원~12,447,720원	9,880,295원~13,173,725원	10,424,798원~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년)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로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선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이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 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노부모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의 청약가점 선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에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에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1.03.(목) ] 07.01. ~ 12.31.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전년도 소득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전년도 소득
--	----------------------------	---------------------------------

- 자산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처측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b>130% 이하</b>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b>130% 초과~160% 이하</b>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b>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b>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b>160%이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b>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처적격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발공시지가)에 면역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개,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발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공급 공통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처측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상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충족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정제 (60%) 적용, 가점제 낙점자는 추정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점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발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주택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ol>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li>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li>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ol>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의 2 내역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정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무부무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등 청약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태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태 전체 신청자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우주택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보다 추첨 대상자가 않은 경우, 다음 순서에서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우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우주택세대구성원에 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우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차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주택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주택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유효할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함입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지,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기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피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지역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여(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행하지 못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기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ul>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무부무양, 생애최초	2022.11.1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li> </ul> </li> <li>• 사업주체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5)</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li> </ul>
		2022.11.15.(화) 09:00~17:3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2022.11.15.(화) 09:00~17:30		
		2022.11.16.(수) 09:00~17:30		

-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당일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접수'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방문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주택공급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됩니다.
- ※ 주택공급신청자는 청약 전 반드시 대전광역시 전입일 확인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청신청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이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항)을 미</p>

리 알이될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선택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청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청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용)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용)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자의 단말기 「(전산)인잔」, 의 인잔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등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2.11.25.(금)</li> <li>확인방법</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 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li> <li>- 2022.12.06.(화)~2022.12.08.(목) (10:00~16:00)</li> <li>장소</li> <li>- 당사 견본주택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5)</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류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25.(금) ~ 2022.12.04.(일) (10일간)	
인터넷	대상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제공일시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사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25.(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일정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필요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어,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청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등)받을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일정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 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동안 신청 유형,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청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여부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진행이 지연 또는 부적격 판명으로 계약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및 장소 안내

구분	자격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시	2022.11.26.(토) ~ 2022.12.01.(목) 6일간 10:00 ~ 16:00	2022.12.06.(화) ~ 2022.12.08.(목) 3일간 10:00 ~ 16:00
장소	대전 에테르 스위트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5)	
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당첨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청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임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li> <li>-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3.) 이후 발행분에 한함</li> </ul>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간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특별공급 신청자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청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자격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우주택사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우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우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
	○		인강도장 및 인강증명서	본인	- 인강도장 및 인강증명서(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접수 시에만 해당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은 경우 -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우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부분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b>출입국사실증명원</b>	<b>본인 또는 세대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해당지역 거주요건 : 대전광역시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임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임주자가족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명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 발급 사업 서류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비자 발급 내역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명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 등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생년월일부터 임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증빙서류(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청약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임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b>부동산소유현황</b>	<b>본인 및 세대원</b>	- <b>소득기준은 초과하고,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 · (발급기관) <b>대입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소유현황</b> · <b>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 소득 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임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표2]
	○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실증명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서(국세청) - 소득증빙 대상 세대원(성년자) 전원중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양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임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가정정수 상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직계존속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우주락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된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기록대조일을 주민등록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여부 확인 (현재 해외체류여부 또는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 직계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여부 확인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b>부동산소유현황</b>	<b>본인 및 세대원</b>	<b>·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당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실증명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서(국세청) - <b>소득증빙 대상 세대원(성년자) 전원증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b>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발급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채외동포 : 국내거사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영)	○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해당 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영자료
	○		무허가건축확인서	해당 시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영자료
	○		소형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주택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영자료
	○		기타 우주락자임을 증명하는서류	해당 시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영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해당 시	해당 기관의 당청사실 무효 확인서 등(한국부동산원 발급)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공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li> <li>■ 주민등록표 등 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세대주, 거주자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li> </ul>				

##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l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li> <li>·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li> <li>( '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해당직장/세무서</li> </ul>
	근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근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근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li> <li>· 연금신청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li> <li>·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국민연금공단</li> </ul>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li> <l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ul>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li> <li>·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ul>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소득금액증명</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ul>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li> <li>·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등기소</li> </ul>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신청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국민연금공단</li> </ul>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신청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관리공단</li> <li>· 세무서</li> </ul>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ul>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li>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주민센터</li> </ul>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li> <li>•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li> <li>• 비사업자 확인 각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국민연금관리공단</li> </ul>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li> </ul>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표2]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 증명표)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 세무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해당 소득세 납부무이자나 소득 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제출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당첨자 포함)	○	서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및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세대원 정보 확인(상세)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본인	거주 기간 확인 (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강도장 및 인강증명서	본인	- 인강도장 및 인강증명서(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접수 시에만 해당	
	○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 - 대조 기간 : 주민등록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해당자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이전 혼인으로 혼인기간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① 부양가족 인정 ( 경우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부양가족 가정을 산정한 경우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부양가족 가정을 산정한 경우 )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포함' 발급 (*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b>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b>
	○	출입국 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내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제출 기간 : 주민등록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② 부양가족 인정 ( 경우2.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포함' 발급 (*1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 시 "상세" 발급 된 제출서류에 한해 인정)	
	○	출입국 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의 해외체류기준 미 충족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제출 기간 : 주민등록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상기 서류 외 계약자인강증명서(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본인 외 모두(배우자 포함) 제3자로 간주 /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해당 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축확인서	해당 시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형차기주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주택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서류	해당 시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	해당 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한국부동산원 발급)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공관으로 발급하므로 유효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관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li> <li>■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세대주, 거주기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li> </ul>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권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우서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통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천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자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II.

계약체결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2.12.06.(화) ~ 2022.12.08.(목) (3일간, 10:00 ~ 16:00)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5)

- ※ 당첨자는 당첨 통·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접수 시에만 해당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 또는 대리인 서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관란으로 발급하므로 유효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5-730685	신한자산신탁 (주)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통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입급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충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자의 명단관리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계약체결 이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 단,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액** : 공급자가 지정하며 공지한 금융기관에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출조건** : 해당금융기관의 대출자격 및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LTV, DTI 적용으로 개인에 따라 차등)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시행위탁사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시행위탁사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시행수탁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상이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제외도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가 적용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원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 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을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시설물 중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동안(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Fitness Club, Healing Space, Switzen Amenity, Kid's Cafe), 주차장(지하5~지하1층)이 있으며, 기타시설로 자전거보관대, 생활폐기물보관소, 무인택배함이 제공됩니다.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의해 당첨된 주택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의 3호에 의하여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 후 입주 할 수 없으며, ②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25,200,000	2,520,000	22,680,000	
66	25,200,000	2,520,000	22,680,000	
84A	28,350,000	2,835,000	25,515,000	
84B	28,350,000	2,835,000	25,515,000	
84C	28,350,000	2,835,000	25,515,000	
84D	28,350,000	2,835,000	25,515,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공급시기 :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추가설치품목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의 품질, 품귀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으로 추가 설치품목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타사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해 하자 처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여부는 계약자(입주자 및 승계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으로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의 추가 설치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형태, 세대간 마감 및 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장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도록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선반의 설치유무, 수량, 크기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량에 따라 확장금액에 반영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제시된 선택형 외에 개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5-730728	신한자산신탁 (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선택품목

###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별코너 확장시 선택 및 구매 가능)

#### 1. 현관 중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3연동 슬라이딩 (전동형) 중문	2,400,000	240,000	2,160,000	

- ※ 주택형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타입의 디자인 외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 현관 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과도한 세기 또는 강제 수동으로 중문 개폐 시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 ※ 전동형 중문 선택 시 인식 센서 방향에 따라 문열림 인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현관 중문 선택 시 디딤판의 위치 및 가구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거실 및 주방바닥(강마루판 → 고급 타일) 변경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거실 및 주방바닥(강마루 → 고급 타일)	2,000,000	200,000	1,800,000	
66	거실 및 주방바닥(강마루 → 고급 타일)	1,800,000	180,000	1,620,000	
84A	거실 및 주방바닥(강마루 → 고급 타일)	2,500,000	250,000	2,250,000	
84B	거실 및 주방바닥(강마루 → 고급 타일)	2,700,000	270,000	2,430,000	
84C	거실 및 주방바닥(강마루 → 고급 타일)	2,500,000	250,000	2,250,000	
84D	거실 및 주방바닥(강마루 → 고급 타일)	2,700,000	270,000	2,430,000	

- ※ 바닥 타일의 표면은 물기 등이 묻어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바닥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줄눈대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타일의 나누기는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아일랜드장 및 Italy Ceramics Panel 상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미적용 → 하부장 + Italy Ceramics Panel 상판	2,300,000	230,000	2,070,000	
84B	미적용 → 하부장 + Italy Ceramics Panel 상판	2,300,000	230,000	2,070,000	
84C	미적용 → 하부장 + Italy Ceramics Panel 상판	2,200,000	220,000	1,980,000	
84D	미적용 → 하부장 + Italy Ceramics Panel 상판	2,300,000	230,000	2,070,000	

- ※ 아일랜드장의 위치는 견본주택 전시세대 및 평면도에 표현된 위치에 설치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아일랜드장 상부 조명 포함)를 이동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아일랜드장 하부 바닥 마감은 생략 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아일랜드 상판은 Italy Ceramics Panel로 시공되며 계약자 임의로 마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4. 주방 벽체 (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주방 벽체(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4,300,000	430,000	3,870,000	
66	주방 벽체(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4,400,000	440,000	3,960,000	
84A	주방 벽체(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4,100,000	410,000	3,690,000	
84B	주방 벽체(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4,200,000	420,000	3,780,000	
84C	주방 벽체(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4,200,000	420,000	3,780,000	
84D	주방 벽체(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4,200,000	420,000	3,780,000	

-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벽체에 적용되는 Italy Ceramics Panel의 디자인은 자재의 컷팅 방법, 제조 시점 등에 따라 각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되며, 패널의 베인의 방향이 랜덤하게 시공됨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 Italy Ceramics Panel은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세라믹 판넬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 시공 편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메지가 발생할 수 있고 육안으로 노출이 되며 제조 과정에서 제품간 이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타일(300\*600)과 흰색 시멘트 메지가 시공될 예정으로, 견본주택은 Italy Ceramics Panel로 전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주방 벽체에 적용되는 Italy Ceramics Panel은 12T 두께로 시공될 예정이나, 현장 여건 및 자재 수급 상황에 맞도록 두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주방 상판(엔지니어드스톤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1,300,000	130,000	1,170,000	
66	주방 상판(엔지니어드스톤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1,400,000	140,000	1,260,000	
84A	주방 상판(엔지니어드스톤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1,400,000	140,000	1,260,000	
84B	주방 상판(엔지니어드스톤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1,400,000	140,000	1,260,000	
84C	주방 상판(엔지니어드스톤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1,500,000	150,000	1,350,000	
84D	주방 상판(엔지니어드스톤 → Italy Ceramics Panel) 변경	1,500,000	150,000	1,350,000	

-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벽체에 적용되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의 디자인은 자재의 커팅 방법, 제조 시점 등에 따라 각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되며, 패널의 배인의 방향이 랜덤하게 시공됨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공 편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메지가 발생할 수 있고 육안으로 노출이 되며 제조 과정에서 제품간 이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Italy Ceramics Panel의 두께는 12T로 시공되며 옵션 미선택 시 시공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20T가 적용되어, 주방 상판을 포함한 하부장의 높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6. 거실 디자인 아트월(타일 → Italy Ceramics Panel 벽체) 변경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타일 → Italy Ceramics Panel	3,100,000	310,000	2,790,000	
66	타일 → Italy Ceramics Panel	3,000,000	300,000	2,700,000	
84A	타일 → Italy Ceramics Panel	4,600,000	460,000	4,140,000	
84B	타일 → Italy Ceramics Panel	3,200,000	320,000	2,880,000	
84C	타일 → Italy Ceramics Panel	3,200,000	320,000	2,880,000	
84D	타일 → Italy Ceramics Panel	3,200,000	320,000	2,880,000	

-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시공되는 Italy Ceramics Panel은 제작 과정에서 색상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 Italy Ceramics Panel은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 Italy Ceramics Panel의 수직도 및 바탕면 평활도를 위해 패널 바탕면에 하지 철폐 또는 판재가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마감 두께가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시공 편차에 따라 Italy Ceramics Panel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메지가 발생할 수 있고 육안으로 노출이 되며 제조 과정에서 제품간 이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Italy Ceramics Panel간 별도의 메지가 시공되지 않으며, panel간의 이격거리는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7. 거실 및 복도 벽체마감(도배마감 → 디자인월 패널(Design Wall Panel)) 변경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도배 및 걸레받이 마감 → 디자인월 패널(Design Wall Panel)	1,900,000	190,000	1,710,000	
66	도배 및 걸레받이 마감 → 디자인월 패널(Design Wall Panel)	1,800,000	180,000	1,620,000	
84A	도배 및 걸레받이 마감 → 디자인월 패널(Design Wall Panel)	1,600,000	160,000	1,440,000	
84B	도배 및 걸레받이 마감 → 디자인월 패널(Design Wall Panel)	1,600,000	160,000	1,440,000	
84C	도배 및 걸레받이 마감 → 디자인월 패널(Design Wall Panel)	1,500,000	150,000	1,350,000	
84D	도배 및 걸레받이 마감 → 디자인월 패널(Design Wall Panel)	1,500,000	150,000	1,350,000	

- ※ 디자인월 패널 미 선택 시 벽면은 거실 도배지 및 걸레받이가 시공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시공되는 디자인월 패널은 랜덤패턴으로 시공되며, 제작 과정에서 색상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 디자인월 패널 시공시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디자인월 패널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 디자인월 패널의 나누기는 기본 생산 사이즈보다 크게 설치할 수 없으며, 코너부위에는 PVC 몰딩이 설치됩니다.
- ※ 디자인월 패널 시공시 고정용 핀 자국이 발생하며, 육안으로 노출되어 집니다.
- ※ 본 공사시 디자인월의 메지는 육안으로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으며, 노출되는 측면은 자체 특성상 별도의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디자인 월 패턴은 상이하며, 디자인 월 시공 부위 및 면적은 다르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각각타입별 디자인월 패널의 적용 부위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8. 거실 우물천장 → 무드 라이팅(거실 및 아트월 간접조명) 변경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우물천장 → 우물천장 +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간접조명	1,800,000	180,000	1,620,000	
66	우물천장 → 우물천장 +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간접조명	1,800,000	180,000	1,620,000	
84A	우물천장 → 우물천장 +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간접조명	2,100,000	210,000	1,890,000	
84B	우물천장 → 우물천장 +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간접조명	2,100,000	210,000	1,890,000	
84C	우물천장 → 우물천장 +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간접조명	2,000,000	200,000	1,800,000	
84D	우물천장 → 우물천장 + 거실 4면 간접조명 + 아트월간접조명	2,200,000	220,000	1,980,000	

-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우물천장 및 아트월에는 조명설치 공간은 별도로 시공되지 않습니다.

- ※ 타입별 우물천장의 크기와 형태가 상이하므로 간접조명의 설치구간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4면 조명 전체의 전원만 작동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조명면을 나누어 작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4면 간접조명 및 아트월 조명은 디밍 조절이 불가하고 조도에 대한 조절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9. 공용욕실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일반 수전 → 고급 컬러 수전 One Piece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500,000	50,000	450,000	

- ※ 공용욕실 특화는 패키지로 선택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 부부욕실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부부욕실 세면대 반다리 세면대 + 욕실 상부장 → LAR 세면대 + 조명형 은경  일반 수전 → 고급 컬러 수전  Two Piece + 비데 → 비데일체형 양변기  일반 레인샤워 수전 → 매립형 레인샤워 수전	2,200,000	220,000	1,980,000	

- ※ 부부욕실 특화는 패키지로 선택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부욕실 특화 미선택 시 은경이 일부 수납공간으로 변경되며, 간접조명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상부장 설치로 안 보이는 바닥, 벽 마감은 생략됩니다.
- ※ 부부욕실 특화 선택 시 욕실 천장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1. 부부욕실 도어(유리 슬라이딩 도어 or 유리 여닫이 도어)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84A/84B/84C/84D	유리 슬라이딩 도어	900,000	90,000	810,000	
66	유리 여닫이 도어	830,000	83,000	747,000	

-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별도의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12. 프리미엄 키친 변경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상부장 : PET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2,100,000	210,000	1,890,000	
66	상부장 : PET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2,000,000	200,000	1,800,000	
84A	상부장 : PET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장식장 : 미적용 → 장식장 + 간접조명	4,200,000	420,000	3,780,000	
84B	상부장 : PET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장식장 : 미적용 → 장식장 + 간접조명	5,000,000	500,000	4,500,000	
84C	상부장 : PET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장식장 : 미적용 → 장식장 + 간접조명	5,000,000	500,000	4,500,000	
84D	상부장 : PET 여닫이장 → 유리도어 플랩장 + 간접조명 장식장 : 미적용 → 장식장 + 간접조명	5,100,000	510,000	4,590,000	

- ※ 프리미엄 키친 미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은 소재, 형태, 개폐 방향, 크기, 디테일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프리미엄 키친 미선택 시 상부장의 내부 마감은 하부장과 동일한 소재,색상으로 설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상부장 및 간접조명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상부장 내부에 간접조명 안전기 설치를 위한 박스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 크기,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유리상부장은 디밍조절이 가능한 컨트롤러를 무선(리모콘)으로 세대당 1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유리장식장은 디밍조절이 불가능하며, 컨트롤러가 제공되지 않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설치되는 간접조명은 상부장, 장식장 각각 전체의 전원만 작동이 가능하며, 조명면을 나누어 작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84A 유리장식장은 냉장고장 옆에 위치하며,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키큰장이 구성되며 본 공사시 위치, 크기,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 침실3 붙박이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주택형	침실 3 붙박이장	1,300,000	130,000	1,170,000	

※ 소형 붙박이장 선택 시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안 보이는 바닥, 벽, 천장 마감은 생략됩니다.

14. 침실1 시스템 가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66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패널형 시스템 선반	4,500,000	450,000	4,050,000	
84A/84B/84C/84D	유리 슬라이딩 도어 + 벽 패널형 시스템 선반	4,800,000	480,000	4,320,000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내부에 설치되는 시스템선반의 프레임 형태, 색상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유리슬라이딩도어와 벽패널형 시스템선반이 시공되며 미선택 시 벽지마감으로 제공됩니다.

15.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1,100,000	110,000	990,000	
66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 도어	1,200,000	120,000	1,080,000	
84A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1,100,000	110,000	990,000	
84B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800,000	80,000	720,000	
84C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1,600,000	160,000	1,440,000	
84D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1,300,000	130,000	1,170,000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내부에 설치되는 시스템선반의 프레임 형태, 색상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62, 84A, 84B, 84C, 84D 타입은 시스템선반만 제공되며 별도의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6. 침실1 드레스룸 도어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84A,84B,84C,84D	드레스룸 유리슬라이딩 도어	900,000	90,000	810,000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별도의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7. 현관 및 복도 팬트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2	현관 팬트리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700,000	70,000	630,000	
66	현관 팬트리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700,000	70,000	630,000	
84A	선택① 현관 팬트리 + 복도 팬트리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1,800,000	180,000	1,620,000	통합 X
	선택② 현관+복도 통합 팬트리 특화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1,800,000	180,000	1,620,000	
84B	선택① 현관 팬트리 + 복도 팬트리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1,900,000	190,000	1,710,000	통합 X
	선택② 현관+복도 통합 팬트리 특화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1,900,000	190,000	1,710,000	
84C	선택① 현관 팬트리 + 복도 팬트리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1,900,000	190,000	1,710,000	통합 X

	선택② 현관+복도 통합 팬트리 특화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1,900,000	190,000	1,710,000	
84D	선택① 현관 팬트리 + 복도 팬트리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2,000,000	200,000	1,800,000	통합 X
	선택② 현관+복도 통합 팬트리 특화 (도어 + 시스템 선반 적용)	2,000,000	200,000	1,800,000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는 본 공사시 선반의 프레임 형태, 고정 방식, 색상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팬트리 공간만 제공되며, 별도의 가구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팬트리 내부에 설치되는 시스템선반의 프레임 형태, 색상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③ 현관+복도 통합 팬트리 통합형은 추가선택품목 선택시에만 공간 통합형으로 제공됩니다.

18. 주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빌트인 후드 (침니형후드→아일랜드형후드)	하츠 SIH-30S	200,000	20,000	180,000	
	빌트인 전기 쿡탑 (3구가스쿡탑→3구인덕션)	선택① 쿠첸 CEN-IF3A0NBA	300,000	30,000	270,000	
		선택② 쿠첸 CIR-O2IH33FLBIB	400,000	40,000	360,000	
	고급형 빌트인 오븐 (일반형→고급형)	삼성전자 NQ50T8539B(K/W)	550,000	55,000	495,000	
	키친핏 냉장&냉동고 (Object Collection)	LG전자 BC1F1AA(냉동)+글라스 BC1L11AA1(냉장)+글라스	2,600,000	260,000	2,340,000	
	키친핏 김치냉장고 (Object Collection)	LG전자 BC1K1AA1(김치냉장고)+글라스	1,500,000	150,000	1,350,000	
	식기세척기 (OBJECT)	LG전자 DUBJ2(12인용)	1,350,000	135,000	1,215,000	
의류관리기 (OBJECT)	LG전자 S3ROF/S3GOF(상의3벌+하의1벌)	1,700,000	170,000	1,530,000		

※ 가전제품은 본 공사 발주 시점에 생산되는 제품으로 설치 될 예정이며,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 키친핏 냉장&냉동고 + LG전자 키친핏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오픈장이 설치되며, LG전자 키친핏 냉장&냉동고 및 LG전자 키친핏 김치냉장고 선택에 따라 가구의 형태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 키친핏 냉장&냉동고 선택 및 LG전자 키친핏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김치냉장고장의 크기가 다소 축소되어 일부 김치냉장고 제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LG전자 키친핏 냉장&냉동고 선택 및 LG전자 키친핏 김치냉장고 선택 시 페어키트가 설치되며, LG전자 키친핏 김치냉장고만 선택할 경우 별도의 페어키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은 선택 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오브제(냉장&냉동고,김치냉장고,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가전제품 옵션 선택시 패널 색상 및 디자인은 제품 준비 시점에 생산되어지는 등급의 패널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류관리기 선택 시 프리스텐딩 타입으로 별도의 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전기 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파세코 PGC-A364RH)이 설치됩니다.  
 ※ 고급형 빌트인 오븐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전기오븐(삼성전자 NQ36A6555CK)가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가구도어가 설치됩니다.

19. 다용도실 세탁기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세탁기장 미적용 → 세탁기장 적용	600,000	60,000	540,000	
84C	세탁기장 미적용 → 세탁기장 적용	700,000	70,000	630,000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하부장내부에 배수드레인 연결을 위해 오픈부위가 설치되며, 바닥의 일부가 단차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일부 세탁기 사이즈에 따라 세탁기 장의 공간이 남거나 폭이 좁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탁기장의 오픈구 폭 및 높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장 내부에 수전이 설치되며 수전 및 배수 드레인의 위치, 높이 등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장 하부장은 배관 및 수전이 노출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뒷판 및 측면, 지판의 형태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장 하부장 지판은 배수 드레인 연결을 위해 타공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크기, 형태,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장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다용도실 공간과 가구도어가 시공되오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옵션 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공기청정 기능 無	62/66	1	거실+침실 1(안방)	3,300,000	330,000	2,970,000	
		2	거실+침실 1(안방)+침실 2	4,400,000	440,000	3,960,000	
		3	거실+침실 1(안방)+침실 3	4,400,000	440,000	3,960,000	
		4	거실+침실 1(안방)+침실 2+침실 3	5,500,000	550,000	4,950,000	
	84A/84B/ 84C/84D	1	거실+침실 1(안방)	3,500,000	350,000	3,150,000	
		2	거실+침실 1(안방)+침실 2	4,500,000	450,000	4,050,000	

공기청정 기능 有	62/66	3	거실+침실 1(안방)+침실 3	4,500,000	450,000	4,050,000		
		4	거실+침실 1(안방)+침실 2+침실 3	5,700,000	570,000	5,130,000		
		1	거실+침실 1(안방)	4,000,000	400,000	3,600,000		
		2	거실+침실 1(안방)+침실 2	5,400,000	540,000	4,860,000		
	84A/84B/ 84C/84D	3	거실+침실 1(안방)+침실 3	5,400,000	540,000	4,860,000		
		4	거실+침실 1(안방)+침실 2+침실 3	6,800,000	680,000	6,120,000		
		1	거실+침실 1(안방)	4,200,000	420,000	3,780,000		
		2	거실+침실 1(안방)+침실 2	5,500,000	550,000	4,950,000		
			3	거실+침실 1(안방)+침실 3	5,500,000	550,000	4,950,000	
			4	거실+침실 1(안방)+침실 2+침실 3	7,000,000	700,000	6,300,000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제품은 본 공사 발주 시점에 생산되는 제품으로 설치 될 예정이며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안방)만 기본으로 설치되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일부실의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배관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위치는 시공상 간섭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거실, 침실1(안방)) 품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 등을 제외하며, 상기 금액은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 공사비 등에 대한 감액 부분과 추가 설치품목에 대한 증액부분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 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합니다.
- ※ 공기청정기 선택 시 필터 교환 주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조사 안내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옵션 시 누수, 천장손상 등에 대한 하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은 홈 IOT와 연동되지 않습니다.(와이파이 키트 미적용)
-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저하, 실외기 작동중단, 실외기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 옵션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06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쿠팡, 고급형 전기오븐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쿠팡, 전기오븐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입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 옵션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5-730728	신한자산신탁 (주)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계좌는 옵션대금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IX

기타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li> <li>•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일부 오차가 생길 수 있음.</li> <li>•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li> <li>• 해당 지역은 지적 특성상 도해지적을 기반으로한 비수치지역으로써, 대지면적의 경우 경계복원측량(수치화 측량)을 실시했을 경우 공부상의 면적과 실측량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정산은 없음.</li> <li>•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별도의 정산은 없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위한 차량 전/출입이 필로티 하부를 통과하는 형태로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로티 기둥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공급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계약 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li> <li>•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li> </ul>
------	---



	<p>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li> <li>•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li> <li>※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li> <li>•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li> <li>•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li> <li>•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li> <li>•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li> <li>•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li> <li>•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li> <li>•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li> <li>•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li> <li>•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량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 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li> <li>•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형,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li> <li>•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li> <li>•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li> <li>•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li> <li>•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li> <li>•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li> <li>• 세대 내부 옵션 관련 계약 사항 및 일정 등은 분양 계약 시 개별 공지 예정임</li> <li>•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공개공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동출몰, 지상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재래시장,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음</li> <li>•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li> <li>•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li> <li>•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승인도서(변경승인 포함)에 해당되는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함</li> <li>• 소유권 이전 등기시 기 계약자의 실거래평중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분양권 전매시 관련서류를 반드시 보관 하여주시기 바람, 전매 확인용 제출서류에 대해 복사/재발행은 불가함</li> <li>• 아파트 및 오피스텔 옥상에는 저수조 및 기계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조업공간이 배치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수 없음</li> <li>•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li> <li>•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li> </ul>
<p><b>마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li> <li>•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거실 아트월, 현관 바닥, 거실 및 주방 바닥(유상웁션)의 타일은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다를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인조강화대리석 젠다이 및 현관 디딤판의 중간에 연결조인트가 생길 수 있음</li> <li>• 주방 상판 및 벽체, 아트월 Italy Ceramics Panel(유상웁션)은 자재 특성상 표면 무늬가 일정하지 않고 시공 조인트가 발생하며, 시공조인트 발생으로 인해 미관상 하자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부부욕실 샤워부스 및 양변기에 설치되는 유리는 프로스트 유리 형태로 내·외부에서 신체가 일부 비춰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재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p><b>견본주택 /홍보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일정기간 보관할 예정임</li> <li>•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및 유상웁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최종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li> <li>• 견본주택 전시세대 천장에 일부 전시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조명 설치 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있음</li> <li>•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li> <li>• 리플렛 및 카탈로그 등 분양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업지내 축적과 단지 주변 축적을 달리하여 표현하였으며, 일부 현황을 간략화 또는 축소 하였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도로, 철도,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형에 설치된 단지 내, 외부의 용벽 및 시설물 등은 일부 도면과 현황 레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여 제작하였으며, 본공사시 실제 현황에 맞추어 실시설계 및 최종 시공될 예정임</li> <li>• 커뮤니티 모형에 표현된 공간 계획, 마감재, 운동기구 및 가구 등은 실시공 시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임</li> <li>• <b>견본주택은 공동주택 84A타입과 오피스텔 84OB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입별 마감사양이 일부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b></li> </ul>

■ 설계

구 분	내 용
<p><b>일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분양 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승인(변경)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시행사에 위임함</li> <li>• 단지내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주출입구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통합 사용되므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li> <li>• 단지내 지하주차장 이용을 위한 차량 진출입이 주동 필로티를 통과하는 형태로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로티 기둥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피스텔의 공급면적, 아파트 및 오피스텔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계약 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축벽 그래픽, 사인, 기반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시 케이씨건설 현장별 특화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li> <li>•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li> <li>•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및 지정은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측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용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헬름,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헬름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li> <li>•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li> <li>• 기부채납하는 도로, 는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 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변 여건 상 당 사업지 내에 인접 건물용 전선주 및 맨홀 등이 경계부 측으로 일부 존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추후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우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임</li> <li>•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적용유)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후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와 규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당 사업장은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하므로 지하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사를 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안전유리난간대가 설치된 발코니 창호가 거실에 설치되어 중량의 거치물이 가해질 경우 유리난간이 파손이 될 수 있음.</li> <li>•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단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로 일부 구간 인근주변 주민들의 보행이 가능하게 설계적용 될 수 있음</li> <li>•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공개공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환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li> <li>•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외부 특화디자인은 분양 이후 KCC건설 내부 디자인 기준으로 변경되어 최종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단지 주변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는 외부로 노출되어 옥외에 시공 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배기 덕트는 외부로 노출되어 옥상까지 시공 될 수 있음</li> <li>•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현재 일부 계획변경이 수반되며,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건축허가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li> <li>•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은 획지별로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 됨.</li> <li>•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li> <li>• 확장시의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음.</li> <li>•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li> <li>•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li>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함.</li> <li>•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임.</li> <li>•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운영실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주차장 등 공용부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li> <li>•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되는 것은 위주로 변경 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지상3층 101동 EPS/TPS, 102동 EPS/TPS</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변경,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상품개성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도로선형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li> <li>• 각 중동 주차입구 홀, 커뮤니티, 근린생활시설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li> <li>•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부지레벨차이에 의한 각종 옹벽 및 조경석은 당사 디자인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음</li> <li>•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18층 피난안전구역 상부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통합용으로, 1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각종홍보자료에 표현된 어린이놀이터 및 커뮤니티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형태, 크기, 규격, 포장범위 및 패턴 등은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음</li> <li>• <b>공동주택은 총 2개동, 최고 38층 높이로 계획(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되어 있음.</b></li> <li>• 단지주변 옹벽 및 시설물 등은 현황에 맞추어 실시설계 및 최종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단지 내 외부계단 위치, 높이, 크기, 마감재 등은 단지주변 현황에 맞추어 실시설계 및 최종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실체 단지 주변 레벨에 맞추어 근린생활시설의 바닥 레벨 및 도어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b>지하5~2층에 기계 및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b></li> <li>• 소방차 전용구간은 사다리차 발판 설치를 위한 단지내 도로 일부구간은 낮은 경계석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단지내 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은 양방향통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비상시 소방차 및 비상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음.</li> <li>• 방재실은 1층, 관리사무소는 3층에 위치함</li> <li>• 입면마감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부위 석재(화강석) 및 특화마감이며, 기준층은 도장마감을 적용하였음.</li> <li>• 지하1층 주차관제(차단기)에 경비실 없음</li> <li>• 지상1층~3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일부부에는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함.</li> <li>• 지하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은 지하1층~지하5층까지 공동으로 사용함.</li> </ul>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단지 남동쪽으로 도로폭 30m도로가 인접해 있고 단지의 남서쪽 도로폭 10m도로, 단지 북동쪽 도로폭 3m도로가 있으며, 도로의 폭 및 형태 등은 현장 여건 및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b></li> <li>• 근린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b>공공장소인 전면공지, 공개공지, 휴게공간과 필로티,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b></li> <li>•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또는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단지 경계부는 인근 단지, 주변도로 및 시설 등과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b>관리사무소 2, 3층에 설치로 인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b></li> <li>•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펜스는 설치되지 않으나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은 설치될 수 있음</li> <li>• 지하철과 인접하게 배치되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저층부는 특화 마감재 및 수성페인트 도장이 혼용되어 시공되며, 사양 업그레이드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특화 마감재의 디자인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및 부대시설의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용홀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li> <li>• <b>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소방관 진입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b></li> <li>• 주동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탑 및 옥상조형을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 외부 입면 형태(옥상조형물, 측벽, 저층부 마감, 동 출입구) 및 색채는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li> <li>•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됨</li> <li>•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옥상)에 설치됨</li> <li>•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됨</li> <li>•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출입구는 캐시씨건설 스위첸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내 전기실 및 발전기실,방재실 등은 통합운영(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되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지상1층에 기계, 발전기실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8층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이 위치하여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냉난방 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li> <li>• 옥상에는 비상시 헬기 구조를 위한 피난 공간이 설치되며, 형태 및 위치, 크기 등은 관련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li> <li>•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음</li> <li>•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4층 옥상정원은 플랜터 형태로 시공되며, 플랜터 벽 및 두껍 마감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될 예정임.</li> <li>• 4층 옥상정원의 난간은 폐쇄형 난간+일부 유리난간으로 시공될 예정으로 난간의 높이, 난간 사양 및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피난계단에서 18층 피난안전구역 진입을 위한 공간 설치로 외부면에서 요철이 발생함</li> <li>• 18층 피난안전층에는 피난안전구역, 기계실 및 제연헬름, 저수조가 배치되며, 이로인한 상하층에는 소음 및 진동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용 엘리베이터가 2대가 배치되며, 근린생활시설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진입 할 수 없음</li> <li>• 주동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이 설치됨</li> <li>• 공용홀 천장고는 소방 및 전기배관 설치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면에서 11~13층에 돌출마감(약 100mm)이 있어 빗물 떨어짐 등의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입면마감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부위 석재(화강석) 및 특화마감이며, 기중층은 도장마감을 적용하였음.</li> </ul>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 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상호제일 및 색상, 상호사양, 유리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형태,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 입면 변경,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상4층 스위첸레드가 설치 예정이며, 본공사 진행 중 위치 및 수량,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스위첸랜드(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임.</li> <li>• 지상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구분 사용여부, 시설의 사용 방법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할 예정임</li> <li>• 주민공동시설 (3F) : 휘트니스클럽, 필라테스존, KIDS 사용어부, 시설의 사용 방법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할 예정임</li> <li>• 휘트니스클럽 및 필라테스존의 기구와 관련하여 계약자 임의로 제품의 변경,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없음</li> <li>•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단지 서쪽 주차진입 램프 상단에 설치되며 1층 외부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쓰레기 하역 등의 처리방법은 현행 기준으로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여야 함</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li> <li>• 주차대수는 총 294대로 아파트용 180대, 오피스텔용 78대, 근린생활시설용 36대로 계획함.</li> <li>• 지하 주차장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련규약으로 결정하여야 함.</li> <li>•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용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의 내부 색채디자인은 캐시씨건설 스위첸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 유효 높이 2.7m, 지하1층 주차통로 유효높이 2.7m, 지하 2층~ 5층 주차통로 유효높이 2.3m 주차공간 전체 높이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음</li> <li>• 지하주차장의 주차유도 시스템은 CCTV카메라를 이용한 권역별 주차가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음.</li> <li>• 전기차 충전설비는 급속기 2대, 완속기 4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 사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차진입 램프 지붕은 건축허가도서 기준에 설치되며, 계약자는 추가 영장 등을 요청할 수 없음</li> <li>• 당 사업장은 차량 진입구 및 단지 내부 1층에 별도의 경비실이 위치하며, 지하1층 주차관리실에서 주차업무가 이루어져야함</li> <li>• 지하1층 주차관제(차단기)에 경비실 없음</li> <li>• 지하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은 지하1층~지하5층까지 공동으로 사용함.</li> <li>• 지하5층에는 주차장, 정화조, 저수조, 헬름, 기계실이 위치함</li> <li>• 지하4층에는 주차장, 발전기실, 전기실, 헬름이 위치함</li> <li>• 지하3층에는 주차장, 헬름, 전기실이 위치함</li> <li>• 지하2층에는 주차장, 헬름이 위치함</li> <li>• 지하1층에는 주차장, 제연헬름이 위치함</li> </ul>
단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PVC발코니 창호는 본 공사시 품압계산에 따라 제품의 사양, 규격 및 크기 등이 결정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견본주택 전시세대에 설치된 제품과 다를 수 있음</li> <li>•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 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li> <li>• 불박이장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안보이는 바닥, 벽, 천장 마감은 생략됩니다.</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li> <li>•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li> <li>•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벽체돌출임</li>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물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li> <li>•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을 위주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li> <li>•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li> <li>• 평형별 제품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달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li> <li>• 각 평형별 유상 옵션은 확장 시 선택이 가능하며, 유무상 옵션 항목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li> <li>•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li> <li>•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세대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현장 내 목업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는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li> <li>•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위,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li> <li>•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li> <li>-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 하부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침실 불박이장 후면, 바닥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음</li> </ul> </li> <li>•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li> <li>•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로 시공됨(단, 장비의 위치 및 환기디퓨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음</li> <li>• 거실 아트월 타일의 마감 및 시공 두께는 안목치수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거실의 안목치수는 인허가도면보다 작거나 다를 수 있음</li> <li>• 거실 아트월 세라믹 패널 유상 선택 품목 선택 시 아트월 자체 및 시공 두께가 일반 아트월 타일보다 두껍고 시공법은 추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되어 시공 예정으로 실제 견본주택 전시세대의 시공 형태와 다를 수 있음</li> <li>• 본세대에 접합유리난간형 발코니 창호로 설치되며, 접합유리 난간의 높이는 실제 바닥에서부터 1.2M이상 확보하였음</li> <li>• 접합유리난간으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며, 과도한 충격으로 접합유리난간이 파손되거나 프레임이 훼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람</li> <li>• 세대 내 부부욕실은 샤워부스와 양변기가 분리되어 있음</li> <li>• 타입별로 부부욕실의 샤워부스 및 양변기 유리도어 열림방향은 상이함</li> <li>• 주방상판 Italy Ceramics Panel 은 시공과정 상 타일의 형태 및 디자인이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타일과 타일 접합면이 노출이 되고 제조 과정에서 제품간 이색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방가구에는 별도의 벽걸이용 악세사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본 공사시 창호 위치는 외부 특화 마감에 따라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음</li> </ul>
<p><b>발코니 / 실외기실 / 세탁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li> <li>• 발코니 확장 시 확장발코니의 외부 창호는 창호도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나,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창호종류 및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형 선택세대에서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측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다용도실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이 낮아질 수 있음</li> <li>• 각 세대의 실외기실 내부에는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며,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고 화재시 하층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각 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층별 설치위치가 다르게 설치되며(층별 교차 시공)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 부위 옆쪽으로 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예정임</li> <li>•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의 그림자 하부 턱은 원활한 실외기 작동을 위해 조정되어 질 수 있음</li> </ul>
<p><b>창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용부의 창호는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루버는 입주자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AL루버가 설치될 예정이며 사양,크기,디자인,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승인도서(변경포함)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li> <li>•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용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li> <li>•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li> <li>• 세탁실 도어는 PVC재질의 단열도어가 설치될 예정이며, 문틀 및 도어의 디자인, 사양, 규격등은 가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거실 발코니 창호는 유리난간대형 PVC발코니창호가 설치되며, 침실 및 그 외 창호에는 분할형 PVC이중창호로 설치됨</li> <li>• 아래의 호실에는 소방관 진입장이 설치되오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침실1 [발코니] 102동 501/503/601/603/701/703/801/803/901/903/1001/1003/1101/1103/1201/1203/1301/1303/1401/1403/1501/1503/1601/1603/1701/1703</li> <li>-침실2 102동 502/602/702/802/902/1002/1102/1202/1302/1402/1502/1602/1702</li> <li>-침실3 101동 501/601/701/801/901/1001/1101/1201/1301/1401/1501/1601/1701</li> <li>• 아파트 소방관진입장은 건축심의 때 철재난간+발코니이중창으로 통과하였으며, 현재 철재난간에서 유리난간으로 변경(84A, 84D) 또는 발코니1로 위치 변경함</li> </ul>
<p><b>전기 / 설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 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주방 벽면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가스배관으로 인해 주방 상부장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음</li> <li>•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 렌지후드 및 주방 상부장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은 직접외기로 우수 드레인의 동파방지를 위해 봉수가 되지 않는 배수 드레인이 설치될 예정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위치 및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또한,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1개소와 침실1(안방) 1개소가 시공되며, 유상유선 선택시 거실과 안방에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음.</li> <li>•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li> <li>• 단위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옷장 등의 오픈된 장소가 아닌 침실벽 등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 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월페드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li> <li>•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단자함, 월페드, 거치형 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주방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무인택배보관함은 지하1층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통합 1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위치 및 사이즈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할 예정임.</li> <li>• 추가선택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무선 AP 및 AI스피커, 홈IoT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실외기 구동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에 설치된 거치형패드에는 타입별 디자인 및 사양, 위치가 다르며, 기기 제어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사양, 위치는 변경예정임.</li> <li>• 준공 후 단지내 시스템 운영에 관한 발생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ex 인터넷, 홈넷, 무인경비, 무인택배, 주차유도관제, 경관 조명 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쿱탑 전원은 전용회로(20A 차단기)로 시공되어지나, 자동전력제어 기능이 없는 제품(고용량, 해외제작 외) 사용시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li> <li>건본주택 전시세대 천장에 일부 전시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조명 설치 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람</li> </ul>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하였습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55,979,280,000	제 01282022-104-0003500 호

### ■ 보증 약관 주요 내용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토목,기계 감리 (주)아이팝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기 감리	통신 감리	소방 감리
회사명			동양건설턴트(주)	
감리금액	957,000,000	96,250,000	54,230,000	458,920,000

**사업주체 현황**

구분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신한자산신탁(주)	(주)마이다스씨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32, 6층(개포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110111-4341999	110111-0607618

**관리형 토지신탁**

※본 분양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 (주)마이다스씨엠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및 시공사 (주)케이씨씨건설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 특약사항은 다른 일반조항 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본사업의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일체의 시행관련 의무(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분양계약 또는 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과 피분양자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 소유권 이전 관련업무, 입주지원 지체상금 등의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 대한 이행 및 책임은 (주)마이다스씨엠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신한자산신탁(주)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마이다스씨엠가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마이다스씨엠입니다.
-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입주지원에 대한 책임의무 등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는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주)마이다스씨엠가 부담합니다.
- 시공관련 의무(책임준공, 사용승인, 하자보수 등 의무를 포함)에 대한 이행 및 책임부담은 시공사인 (주)케이씨씨건설에 있으며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신한자산신탁(주)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본 관리사업부지 (향후 준공예정인 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인 (주)마이다스씨엠과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 (본 분양계약서상의 "갑")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은 위탁자인 (주)마이다스씨엠에 면책적 포괄승계되며, 수탁자의 피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 또한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인 (주)마이다스씨엠에 면책적 포괄승계를 동의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인 신한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 집단대출 미승인,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 또는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및 유의사항과 광고 등을 통해 명기된 사업지 주변(예정)시설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기타 시행자의 사정 및 경제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체 내지 철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 (주)마이다스씨엠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시공사 (주)케이씨씨건설에게 민·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한자산신탁(주)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은 (주)마이다스씨엠과 (주)케이씨씨건설이 부담하며, 계약자(수분양자)는 신한자산신탁(주)에게 일체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을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분양계약자는 이를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사인 (주)마이다스씨엠이 하기로 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마이다스씨엠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주)마이다스씨엠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소유권이전, 사업정산 또는 신탁종료 후 본건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책임은 (주)마이다스씨엠에게 있습니다

**건본주택**

구분	약도	안내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 10:00 ~ 18:00 ※ 정방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건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li> <li>■ 운영기간 :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건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대표번호 : 042) 825-5525</li> <li>■ 홈페이지 : www.대전에테르스원.com</li> </ul>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